NEWS

벌크공급시스템

벌크로리에 의한 LPG공급 가능한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가스안전공사

□ 벌크로리에 의한 LPG공급이 가능한 사업자

구분	LPG판매사업자	LPG충전사업자
사업자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	- 용기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이라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액법 제2조제4호)	- 용기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 연료용 용기,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를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액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액법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액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액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탱크"라함은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액법시행규칙 제2조제5항)
	- 액법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라 함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액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저장능력 확보기준 : 100톤 →40톤 이상으로 완화 (별표3 제1호 다목1 근거)
	※ 용기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액법시행규칙 제4조6호)	

벌크로리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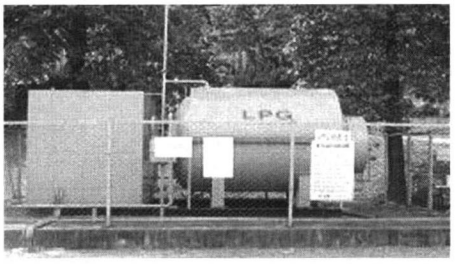

소형저장탱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미만인 탱크]

□ 사업자별 벌크로리에 의한 LPG공급관련 시설기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	용기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방호조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장 확보[별표 5제1호아목(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 벌크로리 확보(별표 5제1호차목) 판매업소 및 영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의 가스전용운반자동차(4륜차 이상)를 확보할 것. 다만, 도서지역으로서 가스전용운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벌크로리 보유[별표 3제1호가목(15)(나)]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운반자동차("벌크로리"라 한다)를 보유할 것

NEWS

□ 벌크로리 등록제도

1.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고법 제5조의4)

○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고법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고법시행령 제5조의4제1항)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고압가스운반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 허용농동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상호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3.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 (고법시행령 제5조의4제2항)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고압가스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 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고법시행규칙 별표 9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4.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록절차 (고압가스검사업무처리지침 제1장제6절제3조)

기술검토 접수 (우리 공사)	➡	시·군·구청에 신규 및 변경등록 신청	➡	시·군·구청에 신규 및 변경등록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시 기술검토는 제외

□ 안전관리자 선임

1. 벌크로리에 의한 LPG 공급 허가시설별 안전관리자 선임

○액화석유가스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

시설

- 사업자가 아래의 선임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 격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 안전관리원 : 1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또는 판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시설(저장능력 100톤이하의 경우)

- 사업자가 아래의 선임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 격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안전관리부총괄자 : 1인 - 안전관리책임자 : 1인 - 안전관리원 : 1인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또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